사학연금제도의 재정재계산

The Actuarial Valuation of Korea Teachers Pension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재정재계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재계산의 방법과 재정재계산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법제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과 관련된 법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법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재계산의 방법으로서 책임준비금의 산정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기업회계 상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장기재정추계는 각 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장기간에 걸쳐서 추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책임준비금의 개념에서부터 책임준비금의 산정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재계산은 산정도 중요하지만 산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정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서언: 재정재계산의 법적 의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하 사학연금법)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는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 국가부담금 · 법인부담금 ·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1]고 규정하고 있다.

제 43조는 균형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다. 여기서 균형은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다. 지출은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 비용은 사학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기 때문에 연금, 일시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하고 사학연금의 운영을 위한 관리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가입자인 개인, 국가, 법인이다. 수입원은 부담금 뿐만 아니라 운용수익금을 합한 것이다.

1) 개정 1995.12.29

여기서 수지균형은 단기 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장래에 있어서 균형'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 균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만 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장기적 지출에 상응한 장기적 수입, 즉 재원조달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래'는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장래는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래는 무한기간 일수 있다. 그러나 무한기간의 균형은 법적으로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장래라는 것은 연금보험료 납입에 의하여 혹은 사학연금법에 규정한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해당 지출의 지급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산의 주기를 적어도 5년이라고 규정함으로써 5년에 한번은 계산하되 자주 계산할수록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재정재계산의 시행주체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사학연금법의 책임운영기관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동 공단이 산정책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재정재계산과 관련된 규정은 43조의 마지막 문장이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라고 부연되어 있다. 수지균형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서 재정재계산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 재계산의 내용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래에 지급해야할 지출소요액을 의미한다. 이는 동법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의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에서 언급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법 43조의 내용은 동법 47조의 2의 책임준비금과 함께 해석될 때 그 의미가 현실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학연금법의 재정재계산의 핵심은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발생한 급여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지 않고 장기재정추계로 대신할 경우에 그 장기재정추계의 산정기간은 추계산정시점에 기 발생한 급여지급책임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가입자 중 최연소자의 기대여명까지 산정이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70년 내외의 장기를 요한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람직한 재정재계산을 위해서는 책임준비금과 장기재정추계를 모두 시행하여야 산정시점의 연금재정 상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책임준비금은 기업회계 상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장기재정추계는 각 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장기간에 걸쳐서 추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비교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2.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 책임준비금 산정을 중심으로

1) 책임준비금의 개념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제도의 운영주체인 보험자가 사망확률 및 예정이율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탈퇴시 지급해야 되는 예상부채액으로서 보유하여야만 되는 금액을 말한다.

민영보험 및 기업연금 등 적립방식을 기초로 운영된 연금제도는 수지상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즉, 급여예상액의 현가가 보험료수입예상액의 현가와 일치하여야 된다. 책임준비금의 계산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장래급여예상액의 현가에서 장래보험료수입예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의 보험료수입의 원리합계에 의해서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원리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과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이다. 과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앞에서 Feldstein[2]의 사회보장자산의 계산방식은 장래법에 기초한 계산방식에 가깝고, Nektarios[3]의 사회보장자산 계산방식은 과거법에 기초한 계산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FAS87[4]의 연금채무개념들은 모두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계산방식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영보험의 경우 수지상등의 원칙하에서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과거법에 의하여 계산하든지, 장래법에 의하여 계산하든지 책임준비금이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공적연금 특히 부과방식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는 제도의 경우에는 수지상등의 원칙하에서 연금제도가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장래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동일할 수 없고, 과거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산정자체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노인인구비율이 낮을 때의 연금보험료가 노인인구비율이 높을 때의 연금보험료보다 낮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경우 과거의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에 상응하는 수리적 연금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거의 보험료수준을 역추산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이 세대별로 변동하지 않을 때는 쉽게 계산할 수는 있으나, 급여수준이 세대별로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가상적인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보았다.

책임준비금의 성격은 채무이행적 측면, 보험계리적 측면, 이익분기 측면, 재무건전성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채무이행적 측면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가입자로부터 매년 받는 보험료 중에서 적립해야 할 금액, 즉 「계약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립금액」, 즉 쌍무계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법상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B/S상 부채계정, 즉 타인자본적 성격으로 보고 있다.

(2) 보험계리적 측면

수지상등의 원칙하에서 평준보험료 방식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로 계약후기 보험금지급의 부족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하는 금액(과거법, 장래법)으로서 이는 객관적인 통계적 · 수리적 기법, 즉 Actuarial Priniciple에 입각하여 산정된다.

(3) 이익분기 측면

현재와 미래 계약자의 공평한 이익배분과 생보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준비금 산정방법과 결정손익 산출기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즉 결정손익은 총수지차에서 보험계약준비금 증가액을 뺀 것으로써 준비금적립 방법과 준비의 차이는 계약자 및 주주의 이익, 계약자 배당 그리고 회사의 자산운용 능력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재무건전성 측면

책임준비금은 생보사의 Risk Financing 측면에서 계산기초율 범위안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담보되어야 하는 최고한의 지급능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 이외에 금리조정준비금(IMR: Interest Maintenance Reserve), 자산평가준비금(AVR: Asset Valution Reserve), 가격변동준비금, 위험준비금, 97조 준비금 등의 제준비금 등은 리스크관리 및 지급여력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적연금 채무의 개념

(1) 사회보장자산(Social Security Wealth)

가. Feldstein의 사회보장자산(Social Security Wealth)

Feldstein은 가계의 자산을 ① 금융투자자산, ② 사업순가치, ③ 부동산, ④ 자동차, ⑤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 ⑥ 생명보험의 현금가치, ⑦ 사적연금의 현재가치로 설정하고, 이 중 가계의

2) Martin Feldstein, "Sop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 *Jr.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5, Sept./Oct. 9174, pp. 505~927.
3) Miltiadis Nektarios, *Public Pensions,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2.
4) 미국의 재무회계기준(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대체자산 개념으로서 ①에서 ④까지의 자산항목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액을 가계의 대체자산으로 정의하였다. Feldstein은 사회보장자산을 이러한 자산중에 하나로 포함시키고, 사회보장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첫째, 총사회보장자산(gross social security wealth)은 개인 및 가구가 65세에 부여받게 될 사회보장급여 현재가치의 추계치로 정의하고, 둘째, 순사회보장자산(net social security wealth)은 개인의 모든 미래 퇴직급여의 현재가치 추계치에서 개인이 지불해야 될 미래의 사회보장세의 현재가치의 추계치를 차감한 액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총사회보장자산의 개념을 수식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GSSW = \int_{65}^{100} S_{65,j}\, b \cdot X_0 \cdot e^{((65-x)+(t-65))g} \cdot dt$$

x=현재연령, X_0=현 시점의 가처분소득,
b=연금급여율, Si, j=j연령까지의 생존확률,
g=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연평균)

나. Nektarios의 pension bonds

Nektarios은 사회보장자산을 국채(naitonal debt)의 변동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핵심은 연금급여지급을 위하여 매년 부가되는 사회보장세(payroll tax)의 총액을 새로운 국채의 발행으로 본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보험료가 연금급여로 전환된 총액은 국가의 채무(liability)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을 연금채권(pension bonds)이라고 칭한다면, 이 채권의 수익률은 부과기준 소득의 증가율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부과기준 소득은 노동력의 증가율과 평균생산성의 합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_i = \int_0^m (\sigma_w \cdot w_0 \cdot e^{(b+\pi)t}) \cdot e^{(n+\pi)(m-t)} \cdot dt$$

F_i = 근로기간동안 취득한 연금채권의 총가치,
m = 근로기간의 길이, b = inflation율,
W_0 = 0기의 연간임금소득
σ_w = 연금보험요율,
n = 노동력증가율, π = 평균생산성 증가율

(2) 기업연금에서의 연금채무

「FAS87」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Financial Accounting Standard)의 연금채무기준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FASB)가 기업회계의 연금비용(Pension Cost)을 파악하기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3종류의 연금채무가 정해져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Bodie(1989)[5]가 제시하는 채무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가. 수급확정부 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수급확정부 급여채무는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기준시점까지 연금수급권이 확정된 급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연금액의 현재가치액으로서 계산된다.

나.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누적급여채무는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과거와 장래의 가입기간을 포함하는 전체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액의 현재가치로서 계산된다. 따라서 누적급여채무는 VBO에서 연금수급권이 확정된 급여이외의 부분도 연금채무산정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 Benefit Obligation)

예측급여채무는 장래의 임금상승을 예측한 퇴직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과거와 장래의 가입기간을 포함하는 전체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액의 현재가치로 계산된다. 따라서 예측급여채무는 ABO에서 예상되는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연금채무산정방식이다.

라. 지수급여채무(IBO: Indexed Benefit Obligation)[6]

지수급여채무는 급여산정시 퇴직이전 뿐만 아니라 퇴직이후의 연금급여상승율을 지수화하여 반영한 연금부채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수급여채무는 예측급여채무에서 반영하지 않는 퇴직이후의 연금액의 실질가치까지 반영한 연금채무 계산방식으로 가장 연금채무를 정확히 반영하는 개념이다. 지수급여채무는 FAS87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연금비용(pension expense)

연금비용은 연금제도가 갖는 여러 측면을 고려한 요소로 구성된다.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① 종업원이 근무 대상으로서 당기간에 획득한 연금급여
② 종업원이 전 기간까지 획득한 급여에 대한 이자
③ 제도자산으로부터의 수익
④ 그 외 요인에 의한 손익

이들 중, ①은 근무비용, ②는 이자비용으로서 연금채무의 변동을 초래하고, ③은 제도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 ④는 보험수리적 손익, 과거근무비용 및 이행시 순채무(또는 순자산)로서 연금채무 및 제도자산의 양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가. 근무비용의 측정

근무비용 측정 프로세스는 전술한 연금채무 측정과 거의 같은 프로세스에 의한다. 연금채무에서는 대차대조표에서 인식되는 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의 모든 것을 계산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근무비용은 「당기」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

5) Zvi Bodie, "Pension Funds and Financial Innovation", *NBER Working Paper* 3101, 1989.

6) Bodie(1989)

무만을 계산 대상으로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근무비용 측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보험수리상 가정을 사용하여 종업원이 장래 받아들일 예측연금 급여총액을 어림잡고, 그 예측연금 급여총액을 할인하여 퇴직시점의 급여현가액을 측정한다.

② 퇴직시점 급여현가액을 제도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각 기간 근무에 할당한다.

③ 당기에 할당된 급여를 대차대조표일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나. 이자비용의 측정

연금채무 및 근무비용은 대차대조표일 시점의 현재가치에 할인되어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이전에 인식된 연금채무에 대해서는 당기간에 이자가 발생한다. 또, 이자상당분도 연금비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연금회계에서는 이자비용이라 한다. 이상의 설명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자비용 = 당기초의 연금채무 × 이자율(할인율)

다. 자산운용수익의 측정

전기까지 적립된 제도자산에서는 당기의 운용에 의해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이 발생한다. 연금제도에서는 적립된 할당금과 이 운용수익이 종업원 급여를 처리하는 재원이 되며, 장기계획에 근거하여 제도자산을 운용한다. 따라서, 회계상은 장기적 시점에서 일정 기대수익율을 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당기초의 제도자산 잔고에 이 기대수익율을 곱하여 당기 기대수익이 계산된다. 제도자산의 기대수익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이 식에서 계산된 기대수익이 연금비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제도자산의 기대수익 = 제도자산의 당기초 평가액(IAS 19호는 적정가치, SFAS 87호는 시장관련가치)×기대수익율

제도자산 운용에서 생긴 실제 수익이 상기 산식에 의한 기대수익과 일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 제도자산이라는 것은 외부에 적립되어 채권이나 주식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 자산이므로 제도자산 그것의 적정가치도 하루하루 변동하고 있다. 이 제도자산의 운용에서 생긴 이자, 배당수입과 제도자산 그것의 적정가치 변동이 실제수익에 포함된다. 즉 제도자산의 실제이익이라는 것은 기간 중 현금의 움직임인 할당금의 갹출과 급여의 지불을 가감한 후의 적정가치를 기초로하여 제도자산의 증감을 고려한 다음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제도자산의 실제수익 = 제도자산의 당기말 적정가치−(당기의 할당금갹출액 −당기의 급여지불액)−제도자산의 당기초 적정가치

제도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연금회계에서는 이 차액을 보험수리적 손익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연인식을 인정하고 있다. 기대수익을 연금비용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기대수익과 실제수익과의 차액에 대해 지연인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실제수익을 직접 인식하는 것에서 생긴 변동을 피한다는 실무측면의 배려에서라고 설명되어 있다.

3)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 산정 프로세스 및 특징[7]

사학연금의 책임준비금 모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 1단계: 책임준비금 계산기초율 개발

◯ 2단계: 책임준비금 모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 · 검토

◯ 3단계: 수리적 보험료 산정모형 개발

◯ 4단계: 책임준비금 산정모형 개발

◯ 5단계: 산정결과에 대한 검증 및 분석

개발된 책임준비금 산정모형은 연금 현가 계산블록−지출 현가 계산블록−수리적 보험료 계산블록−책임준비금 계산블록−정리자원율 계산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 현가 계산블록은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 각종 연금급여 지급액의 계산을 위한 단계로서, 퇴직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의 급여 현가의 계산과정이고, 지출 현가 계산블록은 1단계에서 계산된 연금 현가와 각종의 일시금 및 퇴직수당 등 퇴직시점으로 현가 계산된 모든 급여를 책임준비금 계산시점으로 현가시키는 과정이다. 한편, 수리적 보험료 계산블록은 장래가입자의 제도가입에 따른 예상급여 지출액을 계산하고 다시 급여와 수지균형 시키는 비용부담을 보험료율로 계산하는 과정이고, 책임준비금 계산블록은 현재의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채무를 계산하는 과정으로서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 각각의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고 합산하는 과정이며, 정리자원율 계산블록은 산정된 책임준비금과 적립기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장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거근무분 채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책임준비금 모형에서는 각 개인의 수리적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1명씩 계산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생명표, 연금선택비율, 퇴직비율, 최종임금 등 각종 기초율 자료들이 분석되고 종합되어진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책임준비금 산정모형(KP1998)의 특징을 보면, 개인별(individual) 책임준비금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산정모형에서 접근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산방식이다. 개인별 계산방식은 통합(aggregate)계산방식과는 달리 가입자 개인 하나 하나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별 · 직종별(교원, 직원) · 학교급별 등 다양한 집단별 연금채무를 계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책임준비금 산정모형에서는 할 수 없는 계산방식이다. 특히 사학연금가입자는 직

7) 김용하 외,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산정 및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험학회, 1999.11.

그림 1. 책임준비금 계산 구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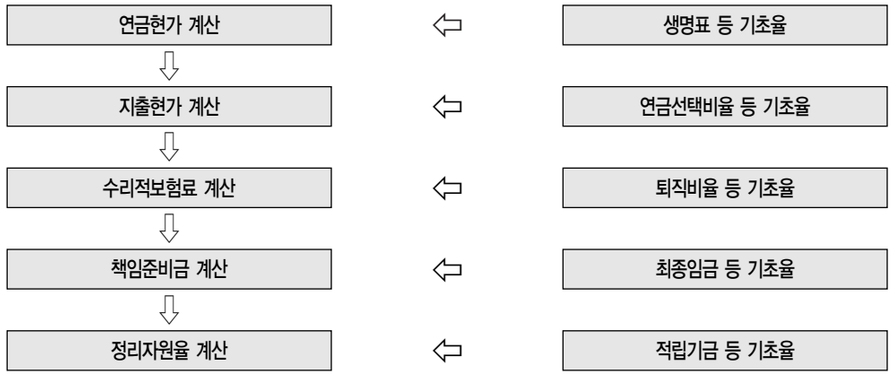

종별로 다양한 특성(입직시점 근무기간 퇴직시점 임금 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망력 등 성별로도 차이나는 다양한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다.

3. 결언: 재정재계산의 적용

사학연금공단에서는 1999년 개발된 책임준비금 모형과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사용하여 매년 책임준비금과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다. 계산된 재정재계산 결과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사학연금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지균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한 형편이다. 사학연금 제도의 특성상 공무원연금 제도 개정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지만, 수지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재계산은 계산 자체만 해도 의미는 있다. 그렇지만 재정재계산 결과 나온 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적절한 조정이 없으면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학연금법 제 43조는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의 2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한정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조항이 의미를 가지고자 한다면 두 조항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도의 운영책임자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보건복지